

경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현장실습 수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‘경운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03.01.>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현장실습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현장실습의 활성화 및 취업연계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한다. <개정 2023.03.01.>

제3조 삭제 <2023.03.01.>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기구) ①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내에 둔다.<개정 2023.03.01.>

② 삭제 < 2023.03.01.>

제5조(구성) ① 본 센터는 센터(소)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본 센터(소)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(소)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[전문개정 2023.03.01.]

제5조의2(업무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현장실습기회의 발굴·확대 및 제공
3. 현장실습정보 및 순회지도관련 업무
4. 현장실습 대비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개설
5. 각종 현장실습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·재정 지원 및 조정업무
6.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되는 업무

[본조신설 2023.03.0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③ 위원장은 센터(소)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⑤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3.03.01.]

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23.03.01.>

1. 현장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한 제반 사항
2.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학점 편성 및 이수 관리
3.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실습기관 관리 및 확대
4.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지도 및 관리
5. 삭제

4장 삭제 < 2023.03.01.>

제8조 삭제 <2023.03.01.>

제9조 삭제 <2023.03.0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03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